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9월 29일, 전종덕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9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2.1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 2. 10.)

제2차 전체회의(2026.2.11.)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
(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전종덕의원)

현행법은 결정형식 및 주문형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현행법 제68조제1항에 대해서 한정위헌결정을 하였고, 제68조제1항 본문 중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에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음.

이에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0조, 제45조, 제47조, 제68조 및 제7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로 직접 회부하였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함.

4. 대체토론의 요지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 대상에는 법원의 재판이 제외되어 있으나, 사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에 대한 기본권 구제의 공백 방지 및 기본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심사에 이어 제4심의 법원으로 기능하게 되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침해할 수 있고, 소송 남발로 인한 사법체계의 비효율, 소송 지연에 따른 국민의 심리적·재정적 부담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됨.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생 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